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실등"이라 한다)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,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 관광지 등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3조제2호에서 "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란총면적 1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와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다지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.
- 제4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3항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야 함
 - 2.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 - 3.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, 관리시설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

지 등을 설치할 수 있음

- 4.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(페이퍼타올)·그림·사진·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
- 5.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
- ②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- 1. 범죄 및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외부에 CCTV 설치
- 2.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공 간을 막는 안심칸막이 설치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[전문개정 2021, 9. 27]
- 제4조의2(안전관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개방화장실
 - 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. 단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관리자로 한다.
 - 가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(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) 나.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·개인 소유 공중화장실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3, 9, 27]

- 제5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(이하 "관리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3년마다 공중화장실 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1, 9, 27〉
 -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9. 27〉
 - 1. 화장지(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)
 - 2. 손세정제
 - 3. 비데
 - 4.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
- 제7조(관리대장의 비치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시설현황과 유지·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- 제8조(화장실의 개방)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 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.
 - 1.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사진·동영상 촬영, 기물파손·도난·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
 - 3.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4.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·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.
- 제9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혐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
- 2.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
- 3.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
- 4.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일 것
-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10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)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
 - 2.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
 - 3. 휴 · 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
 - 4.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
- 제11조(개방화장실의 지원)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 ·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〈개 정 2023. 9. 27〉
 - 1. 휴지걸이, 옷걸이, 손건조기, 소지품 선반,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
 - 2. 화장지.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
 - 3. 청소용 세정제, 방향제, 탈취제, 소독약품,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
 - 4. 안심비상벨.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
 - 5. 청소 등 관리

- 6.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
-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, 횟수, 수량,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. 9. 27〉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제16조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게 위탁할 수 있다. 〈신설 2023. 9. 27〉

[제목개정 2023. 9. 27]

- 제12조(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 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· 여성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할 것
 - 2.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
 - 3.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
 - 4.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
 - 5.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
 -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
 - 2. 청소, 환기, 소독, 제초·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 할 것
 - 3. 분뇨는 기온,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 · 운반할 것
 - 4.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
- 제13조(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)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4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 ·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
-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
-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
-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·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(명칭)·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.
- 제15조(금지행위)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
 - 2.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
 - 3.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
 - 4. 공중화장실등에 분변·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
 - 5.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- 제16조(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)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 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 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, 9, 27〉
 - 1. 용인도시공사
 - 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자
- 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〈2018. 12. 14 조례 제1892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 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부칙〈2021. 9. 27 조례 제218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. 9. 27 조례 제245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.
- 나.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변동되었을 경우, 변동 이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.
- 다.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만원)

위 반 사 항	근거조항	부	과 금	액
귀 반 사 생	는기소양	1차	2차	3차
1.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·운영한 때	법 제21조제1항	50	100	200
2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21조제2항제1호			
가.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		30	60	100
나.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		10	40	60
3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 한 때	법 제21조제2항제2호			
가.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		10	20	50
나. 법 제11조제4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		20	40	60
4.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21조제2항제3호			
가. 설치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 미이행		20	50	100
나.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 미이행		20	40	60
5.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	법 제21조제2항제4호	10	30	50
6.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	법 제21조제3항	5	20	50

[별지 제1호서식]

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

		※ =							수 있는 도), 화	사진) 장실평면	도			
화장실명칭					=	는 재 기	:							
건물주용도				준공(일자				개방화장실	지정	[]지정 []미지정			
건물연면적	m²			화장 바닥(- 1		m²		일평균시용	인원				
시설운영관리	[]자체관리 []위탁관리 관리주체(입					l명)								
청소주기		호 /역	일		괸리자									
관리인	[]	남녀구분	[[] 남녀통합	[]	무		위생기		[]이수 []이수안함				
점검일지	[]	유 []	무	P	검주기	시용료					[]유 []무			
					[개변기 수				170	소변기 수			
변 기	Fold		성용	alzial	Falu	_	성용	اماتاما	앙성공용				70	
	동양식	서양식	상애인	어린이	동양식	1485	장애인	어딘이	장애인	어린이	성인	어린이	겸용 	
	세면대				기저귀고			·유아 치대	 재실감지 조명·음향		비상호출기			
편의시설	성인	개	어린	<u>리</u> 이개	남_기	네여_;	·H	개	[]조명[]음향 []무	개			
진 - IME	휴	걸이	대・소	℃변기 선반	옷	걸이	손	<u>건</u> 조기	냉·닌	방시설		환풍시설		
	[]유	[]무	[]대	[]소[]무	[]유	유 []무 개]난[]무	[]유[]무			
		년월일				비고								
시설관리 내용														
											I			

[별지 제2호서식]

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계	t											
	11=(pd=1)													
Altiol	상호(명칭)													
신청인	성명(소유자관	리사)			(TI=1,) =									
	주소						(전화번호:)				
	화장실 소재지 [] 옥내 [] 옥외													
	화장실 상세위													
Olul-1-1-1	건축물 주용도		1)		업종									
	건물연면적(m²)				<u>ㅂㅇ</u> 화장실비닥	·며전(m²)	준공역	르^! 균시용인원						
일반현황		E. 10 C.C												
		·- ·- ·												
	[] 연중개방													
		[] 절수설비 [] 공공하수도 유입 []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												
	[] 지체관리 [] 위탁관리 관리주체(업체명)													
			지국신니			^{3시3)} 전화번호:								
운영관리현황	화장실관리인)												
F05-150	위생교육(위생													
	청소주기(일) <u></u> 회 점검주기 [일, 주, 기타] <u></u> 회													
			소변기 수											
변기현황		남성	용				여성용							
L/12/2	동양식	서양식	장애인	어린이	동양식	서양식	장애인 어린이		성인	어린이	겸용			
						od 0 od	T -	11117171						
		세면대		기저구	교환대	영·유아 거치대		해실감지 5명•음향	비상호출		7			
	III. IOH	٥١٦١	ol all	1.1. 70	الت لم	기시대 개				71				
편의시설 등	성인개		이개		여개	"		[]음향 []무	개					
	휴지걸이	대·소	변기 선반	옷	걸이	손건조기	냉	냉·난방시설		환풍시설				
	[]유[]무	. []대[[]소[]무	[]유	[]무	개	[]냉	[]난[]무	[]유 []무			
	조리되시 드이	W=1 D1 D			مال دداعال ماد	וו ומוד וו	카를데 Iel							
'용인시 공	중화장실 등의 선	일지 및 판	[디 소데] 제	9소세2양	게 따다 위의	4 같이 신	성압니다.							
								년	월		일			
용인시장 귀하 신고인 (서명 <u>5</u>										명 또는	인)			
	5 TI OF													
.151.1														
신청인 .	같은 층 입주자의	의 동의서(집합건물인 경	영우만 해딩	(함)					수수료	! =			
첨부서류										없음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	개방화장실 평가서												
	건물(화장실)명						주용도						
	소재지												
시설 현황	규모	건물연면적 : 화장실 바닥면			2	설치	년도						
	소유자 성명				곤	난리주처	(업체도	명)					
	화장실관리인				·	(전:	화번호	:)				
	평가항목	 [배점]		점		수			비고				
	1. 화장실 이용 :	수요 [30점]	30 []	25 []	15 []	10	0	5	500명/일 이상[30], 200명[25], 100명[15], 50명[10], 50명 미만[0]				
평	2. 시설구비[25점	·l설구비[25점]			15	10	5	장0 편 ⁹	성변기 수량: 2개[5], 3개이상[10] 배인화장실 설치[5] 비시설(손건조기 등)[5] 당실 내부가 직접보이지 않음[5]				
가	3. 친환경성[15점	<u>4]</u>	15 []	12 []	9	6	3 []		절수설비[3] 개인하수처리[3] 공공하수도유입[9] ※ 중수도시설 : 가점[3]				
丑	4. 관리상태[15점	설]	15 []	12 []	9	6	3		청결상태 정도				
	5. 개방시간[15점	15 []	12 []	9	6	3	*	연중개방[12] 매월 1~2일 폐쇄[9] 주6일 개방[6] 주5일 개방[3] 12시간/일 이상 개방 시 가점[3]					
총 평가	점 : 자 의견 :												
					년 	_	실 경가자	_	(날인 또는 서명)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유료화장실 []설치 []변경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수일자			처리기긴					나 79				
	상호(명칭 성명(대표 주소				생	생년월일(법인·사업자번호) (전화번호:)								
일반현황	소재지 화장실 상 건물연면 ^조 건축물 용	덕(m²)	건물 내)			[] 옥내 [] 옥외 화장실연면적(m') 준공연도								
화장실관리인	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생교육(위생 및 시설관리, 수질오염예방 등) 이수 여부 [] 이수 [] 이수안함												안함	
변기	동양식	대변기 어린이		성용 장애연	인 어린이 성			변기 :						
		세면대	기저	귀교환대	영·유아 환대 거치대			재실경 조명·			비상호출기			
편의시설 등	성인7	배 어린	릴이개	남	개 여 _	4 <u>_</u> 개 :			[]조명	[]음	향 []무	개		
	휴지걸C	기 대·소	<u>}</u>	옷걸이	2 선조기			냉·난방		시설	환풍시설			
	[]#[]]무 []다	H[]소[]두	[]]유 []무]무 개			[]냉[]난[]무			[]유[]무		
사용료			원(1호	희 / 기	타	:)							
「용인시 공중	화장실 등의	의 설치	및 관리	조례」	제14조	.에 1	따라	위와	같이 신	고	합니다.			
용인시장 귀히	5}							신고역		<u> </u>		월 서명 또	일 는 인)	
<u> </u> 1	화장실 내	부 평면	<u></u> 두											
신고인 제초시로 3.	화장실 관화장실 시화장실 시그 밖에 해당한다	는리 및 원 사용료 산 유료화정	운영계획 <i>/</i> 출명세서		을 증명	하는	= 서	류(변경	경신고:	의 :	경우만	수 <i>수</i> 없		

[별지 제5호서식]

제	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													
상호(명칭)														
대	성 명						생년	1월9	일					
표 자	주 소													
į	관리인 (전화번호:										:)	
	소재지													
	면적					m²	시설	설물	주용	분도				
			 성용	수				- 소변기 수						
	변기						여성	3용						
시 설	271	동양식	서잉		장애인	어린이	동양식 서양식 장애인		장애인	어린이	성인	어린이	겸용	
내														
ajo		세면기			기저	귀교환	대		·유아 치대		!감지 · 음향]상 출기	
	편의시설 등	성인용	.대 (어린여	이대	남_	개 여개		개		[]쩅[]황[]		7	개
		휴지걸이		대 2	소변기 선빈	}	옷걸이		손건조기		냉·난방시설		환풍	두시설
		[]# []	무 [[]대	[]소[]무	[[]유[]무 개 []냉[]난[]무 []유[]							- []무
	사용료				원 (호	/ 기티	})					
Ò	「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 임을 증명합니다.													
					Ļ	<u>=</u>	월	,	일					
					용 (인 스	ㅣ 장		인					